

## 제1장

###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 제1절

##### 최초규정

#### 제1.1조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 제1.2조

#####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그들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sup>1</sup>

#### 제1.3조

##### 의무의 범위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에 상정된 협의는 제20장(분쟁해결)에 수립된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그러한 정부와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에 의한 협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 제2절 일반정의

### 제1.4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 그리고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sup>2</sup>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한국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준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2장(제도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 그리고

나. 에콰도르의 경우,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에콰도르인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사회연대경제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용, 이익 및 자본 축적보다 인간과 노동을 그 활동의 핵심에 두고, 연대와 협력 및 상호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필요를 충족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sup>3</sup>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상업화, 자금 조달 및 소비의 과정을 조직하고 개발하는 경제 조직의 한 형태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sup>4</sup>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

<sup>3</sup>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이해관계자이다.

<sup>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 나. 에콰도르에 대하여, 에콰도르의 헌법에 따라, 에콰도르가 국제법과 자국의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 인접 도서, 영해, 칼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층토 및 상공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sup>5</sup>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

<sup>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